

고소·고발장

고 소 인

1. 정대화

직업 : 상지대 교양학부 교수

2. 상지대학교 교수협의회

회장 최동권

3. 상지대학교 총학생회

회장 윤명식

고 발 인

별지 기재와 같음

피고소인

1. 김문기

직업 : 상지대학교 총장

2. 조재홍

직업 : 상지대학교 부총장

3. 조용길

직업 : 상지대학교 직원(총장 비서실장)

고 소 취 지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형법」 제316조 비밀침해죄, 제314조 업무방해죄, 제324조 강요죄 및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제16조 제1항 제1호 타인간의 대화 녹취죄,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제16조 제1항 제2호 타인간의 대화 공개죄로 고소하오니 철저히 수사하여 의법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 소 이 유

1. 당사자들 관계

피고소인 김문기는 상지대학교 재단 이사장이자 총장으로 재직하면서 학생 부정입학 등의 혐의로 구속돼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는 등 사학비리 문제로 1993년 총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그 이후 상지대학교에 관선이사제가 도입되었으나 김문기와 이익을 같이하는 이사들이 여전히 학교를 장악하고 있다가 2014. 8. 다시 김문기를 총장으로 선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소인 정대화, 상지대학교 교수협의회, 상지대학교 총학생회는 상지대학교의 정상화를 위하여 김문기 퇴진 운동을 벌여왔습니다.

상지대 구성원들이 김문기의 총장선임에 반대하는 여론이 빗발치자 피고소인

조용길은 대외적으로 총장 비서실장이라고 자칭하면서 김문기의 총장 선임에 반대하는 학생, 교수들을 사찰하는 역할을 하였고, 상지대학교 총장인 피고소인 김문기 및 상지대학교 부총장인 피고소인 조재홍 역시 공모하였습니다.

2. 고소의 경위

피고소인 김문기의 총장 복귀가 학내 갈등을 일으키고 수업파행의 원인이 되자 교육부는 2014. 9. 18. 상지대 측에 학교 정상화 촉구 방안 제출을 요구하였고, 상지대는 2014. 10. 10. ‘상지대학교 운영 정상화 촉구에 대한 의견 제출’ (참고자료 1 상지대학교 운영 정상화 촉구에 대한 의견 제출)을 작성하여 교육부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문건에는 상지대학교측이 학생, 교수들을 사찰하고(참고자료 1 - ① “총장실 앞 복도 농성 일지”, 1 - ② “불법 집회 및 시위 일지”), 고소인 정대화와 학생들의 사적인 대화 녹취록까지 첨부되어 있었으며(참고자료 1 - ③ 정대화 교수의 대화 녹취록), 김문기에 대한 실명 지지선언으로 상지대학교 직원들을 강요하고 업무를 방해한 자료들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참고자료 1 - ④ “발전계획에 대한 직원 지지성명서”).

이에 더하여 위 [별첨자료 6]과 같이 고소인 정대화 교수의 대화내용을 녹취한 상지대학교 학생회 간부 B군은 피고소인 조용길이 녹취를 지시하고 총학생회 활동을 사찰하였다는 양심선언을 하였습니다(참고자료 2 - ① B군 진술서, 2 - ② 내지 ⑤ 문자메세지).

B군의 양심선언에 피고소인 조용길은 B군에게 자발적으로 녹취를 하여 폭로한 뒤 동문회에 신변보호 요청을 한 것으로 말하도록 종용하면서 자신의 도청 증거를 조작하려 하였고, 실제로 같은 내용으로 상지대학교 총동문회장 김원화 명의의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증거를 인멸하려 하였습니다(참고자료 2 - ⑥ 녹취록, 2 - ⑦ 상지대학교 총동문회장 김원화 보도자료).

이에 고소인들은 교육현장에서 자행되고 있는 비교육적, 반윤리적 범죄행위들을 좌시할 수 없었기에 본건 고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3. 피고소인들의 범죄행위

가. 불법사찰로 인한 비밀침해죄 및 사생활의 자유 침해

상지대학교가 교육부에 제출한 ‘상지대학교 운영 정상화 촉구에 대한 의견 제출’ (참고자료 1)에 첨부된 별첨자료 1, 2(참고자료 1 - ①, ②)에는 김문기에 반대하는 학생 및 교수들의 일거수 일투족이 자세히 나열되어 있습니다.

B군의 진술서에 의할 경우에도 2014. 8. 30. 피고소인 조영길은 학생회 임시총장실 진입에 대한 정보를 미리 얻어 2014. 9. 2. 직원들을 동원하여 총장실 진입을 막았습니다(참고자료 2 - ①).

또한 피고소인 조용길은 B군에게 김문기 반대 현수막을 훼손하기 위하여 동

아리방 비밀번호를 물어보기도 하고, 학생회 활동의 일거수 일투족을 물어보는 등 끊임없이 사찰을 감행하였습니다(참고자료 2 - ④, ⑤).

사찰의 방법에 따라 형법 제316조의 비밀침해죄가 성립될 수 있으며, 사찰행위 자체는 헌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법행위에 해당하므로 구체적인 사찰내용 및 방법을 적극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도청 및 도청내용 공개로 인한 통신비밀보호법 위배 교사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여 녹취를 하거나 지득한 내용을 공개하였을 경우 같은법 제16조 제1호, 제2호에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B군이 고소인 정대화 교수와의 순수한 대화 참가자였다면 대화를 녹음한 것이 위 법규에 위배되지는 않았을 것이나, B군의 녹취는 피고소인 조용길의 교사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서 범죄행위에 해당합니다. B군은 피고소인 조용길이 제공하는 금품 및 총학생회 선거 지원 약속을 받고 조용길의 지시에 의하여 2014. 10. 4. 정대화와의 대화에 참여하여 녹취하였음을 고백하였습니다(참고자료 2 - ①). 피고소인 조용길은 그 다음날인 2014. 10. 5. 녹음내용을 받고서 그 내용을 자신들이 녹음기로 녹음했다고 하겠다고 B군을 안심시킨 것으로 보아 피고소인 조용길 역시 녹취 교사가 범죄행위임을 알고 있었습니다(참고자료 2- ②). 또한 피고소인 조용길은 B군의 양심선언으로 학교측의

비리가 발각될 위기에 처하자 B군에게 전화하여 자발적으로 대화를 녹취하여 피고소인에게 보내준 것으로 이야기하면서 총동문회에 신변보호요청을 하도록 회유하였고(참고자료 2 - ⑥), B군이 이에 따르지 않자 직접 총동문회 명의의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하여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보아(참고자료 2 - ⑦) 범죄사실에 대한 고의성 역시 충분히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피고소인 조용길은 2014. 10. 9. 정대화, 윤명식이 국정감사에 참여하여 발언한 내용들에 대한 대화 역시 녹취를 교사하기도 하였습니다(참고자료 2 - ③).

피고소인들은 위와 같이 도청으로 입수한 정대화 교수의 대화내용을 교육부에 제출하는 보고서에 버젓이 개시하여 도청된 대화를 공개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역시 위반하였습니다.

다. 불법 사찰, 도청으로 인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피고소인들의 위와 같은 불법사찰 및 도청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도 해당합니다. 교수와 학생들의 염원인 상지대학교 정상화를 위한 일련의 활동들은 고소인 상지대학교 교수협의회 및 상지대학교 총학생회의 사회적 지위에서 영위되는 계속적인 업무로 보호가치가 충분합니다. 그런데 피고소인들은 고소인의 정당한 업무에 대하여 끊임없이 불법사찰과 도청으로 피고소인들의 활동을 미리 알아내고 방해하여왔는 바, 이는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라. 직원들에 대한 김문기 총장지지 강요죄 및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피고소인들은 직원들에 대하여 김문기 총장의 지지여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는데, 문제는 소속, 부서 및 실명까지 적시하여 지지선언을 받았다는 점입니다(참고자료 1 - ④). 학교와 고용관계에 있는 직원들 입장에서 실명으로 지지여부를 묻는 설문에 감히 반대의 의사를 표명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나아가 피고소인들은 김문기 측에 적극 협조하는 직원과 그렇지 아니한 직원을 구분하여 인사전형을 일삼고 있습니다. 보통 대학 사무처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정 보직에 2~3년 근무하면서 전문성을 쌓는 것이 보통이나 피고소인 김문기, 조재홍은 1년 사이에 대부분의 직원을 2회 이상 부서이동을 시키고 김문기에게 협조적이지 않은 직원의 경우 1년 동안 5번의 전보를 일삼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직원들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에 대한 협박으로 의무 없는 지지선언을 하게 하는 것은 형법 제324조 강요죄를 물어야 할 사안이며, 동시에 인사횡포를 통하여 직원들이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것은 형법 제314조 제1항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죄책을 물어야 할 사안입니다.

마. 피고소인들의 공모

피고소인 조용길은 상지대학교 총무과 직원으로 대외적으로 비서실장을 자

칭하면서 사찰 및 도청을 지휘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이 업무지시를 받는 상지대학교 부총장 조재홍 및 총장 김문기 역시 위와 같은 사실을 몰랐을 리 만무하며, 오히려 적극적으로 위와 같은 범죄행위들을 공모하여 김문기의 총장직 유지를 도모하였습니다.

무엇보다 피고소인 조용길이 주도한 범죄행위뿐만 아니라 위에서 열거한 모든 범죄행위들의 결과가 고스란히 적시되어 있는 ‘상지대학교 운영 정상화 촉구’에 대한 의견 제출’에 피고소인 조재홍은 결재권자로 서명하였는바, 이와 같은 사실은 조재홍 및 조재홍의 상관 김문기의 지시 하에 범죄행위가 자행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 역시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 내지 인식이 있으면 직접 범행에 가담하지 않더라도 공모관계를 인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대법원 2002. 4. 10. 2001도193 판결), 위에서 열거한 일련의 범죄행위들에 대하여 상지대학교 부총장 및 총장의 인식과 수용이 존재하였음이 분명한 바, 피고소인 조재홍 및 김문기 역시 공범으로서 처벌받아야 마땅합니다.

4. 결론

21세기 대학교육의 터전에서 사찰과 도청, 인사를 담보로 한 지지선언의 강요가 감행되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피고소인들의 범죄행위들을 빠짐없이 조사하여 다시는 법을 경시하고 자신의 안위를 위하여서라면 서슴

치 않고 대학 구성원의 전부라 할 수 있는 학생, 교수, 직원들에 위해를 가하는 만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참 고 자 료

1. 상지대학교 운영 정상화 촉구에 대한 의견 제출
2. 김문기의 불법적인 구성원 사찰 및 총학생회 간부 매수, 불법도청 관련 사건일지

2014. 11.

고소인 정대화

상지대학교 교수협의회

회장 최동권

상지대학교 총학생회

회장 윤명식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귀중

[별 지]

고 발 인 명 단

1. 김종선(전교조 부위원장)
2. 김병국(대학노조정 책국장)
3. 안진걸(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4. 송주명(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상임의장)
5. 유병제(전국교수노조위원장)